

배포 2024. 3. 5.(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3. 5.(화) 12:00

(지 면) 2024. 3. 6.(수) 조간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조치사항	개정 전	개정 후(24.3.1.~)
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좌동
4·5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좌동
6·7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 영구보존(삭제 불가)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개정 전·후 비교]

조치사항	개정 전	개정 후(24.3.1.~)
1·2·3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4·5·6호	출결상황 특기사항	
7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호	인적·학적 특기사항	
9호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설명자료

담당 부서 <총괄>	책임교육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도형 (044-203-6972)
		담당자	사무관	정민재 (044-203-6975)
			교육연구사	길경섭 (044-203-6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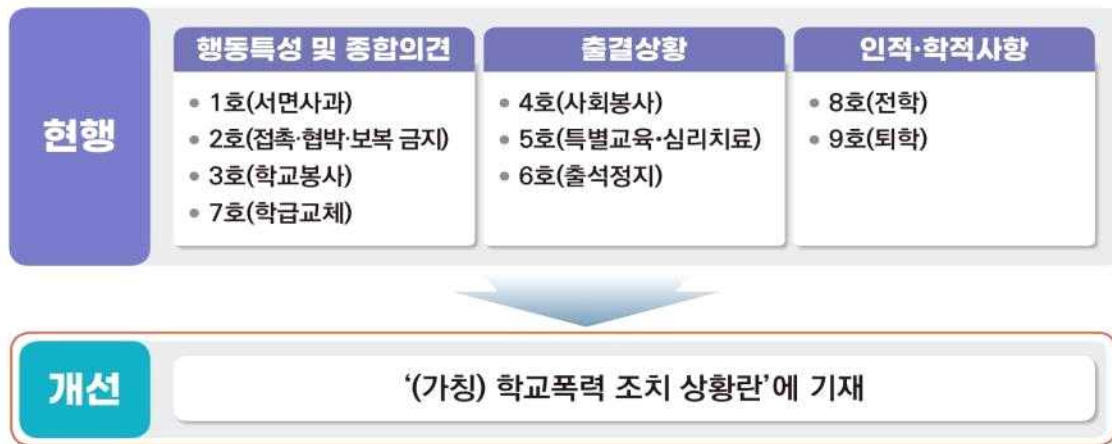
□ 개정 개요

- (배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4.12)
 -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법률 제19741호('23.10.24.공포, '24.3.1.시행), △법률 제19942호('24.1.9.공포, '24.3.1.시행)
- (추진경과) 전문가·국회·시도교육청 협의('23.3.~4.), 관계기관
입법예고('24.1.) 및 국무조정실·법제처 심의 완료('24.2.)

□ 주요 개정 사항

- (제21조) 학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 후 일원화하여 기록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 (제22조)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 강화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u>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u>	2. ----- ----- ----- ----- ----- <후단 삭제제>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u>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u>	3. ----- ----- <후단 삭제>

용도 적어야 한다.

4. 5. (생략)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 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
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4. 5. (현행과 같음)

6. _____

 _____ <후단 삭제>

③ 제2항 제6호

1. · 2. (생 략)

③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2. (생 략)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
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
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4. · 5. (생 략)

<신 설>

④ · ⑤ (생 략)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 · 보
존 등)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1. · 2.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자
율 · 자치활동-----

4. · 5. (현행과 같음)

6.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
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 · 보
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제1호-----

-----.

③ -----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④ (생 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현행과 같음)